

공공관심사가 아닌 경우 현실적
악의의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

Dun & Bradstreet v. Greenmoss Builders
9 Med. L. Rptr. 1902(미연방대법원, 1985. 6. 26)

사실개요

다섯 명의 제한된 구독자들에게 재정이나 기타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신용조사업체인 Dun & Bradstreet(피고, 상고인)가 어느 날 건축도급업자인 Greenmoss Builders(원고, 피상고인)가 법원에 자발적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신용조사서를 위독자들에게 보냈다. (위 신용조사서의 구독계약에 의하면 조사서의 내용은 타에 전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보고서는 전혀 잘못된 것이었다. 바로 그날, 거래은행과 장래의 금융문제를 논의하던 원고는 그 은행이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보고를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그는 즉시 피고 회사의 지점에 전화를 걸어 잘못을 지적하고 그 수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허위보고를 받은 업체들의 명단을 알려 줄 것을 요구했다. 피고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해볼 것을 약속하였으나 그 보고서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거절하였다. 조사결과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고교생이 파산신청서류를 검토하면서 원고회사 전 직원이 제출한 파산신청서를 원고회사가 제출한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인한 오류로 판명되자 피고는 위 보고서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경 후에 원래의 보고를 받은 다섯 명의 구독자에게 정정판을 발송했다. 그 정정판은 원고회사 자체가 아니라 원고회사의 종전사원이 파산신청을 한 것이고, 원고회사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원고는 위 정정보고에 만족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원래의 보고서를 본 구독자의 명단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다시 거절했다. 그러자 원고가 버몬트 주 법원에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허위보고로 인하여 그의 평판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고, 보상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다.

소송경과

1 심의 심리결과 배심원들은 원고승소의 평결을 내리면서 보상적 또는 추정적 손해로써 5 만 불, 징벌적 손해로써 30 만 불의 배상을 인정했다. 피고는 추정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법(연방대법원의 거츠 판결)인데, 1 심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지시를 내림에 있어, 현실적 악의의 입증이 없어도 그와 같은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1 심판사는 피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원고가 주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버몬트 대법원은 거츠 판결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재심신청을 인용한 1 심판사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동 버몬트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허가(certiorari)를 받아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게 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버몬트 대법원판결을 인용하였다.

판결이유 요지

사인이 공공의 관심사가 아닌 사안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당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여야만 한다는 수정헌법 제 1 조 상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제한은 명예훼손적 표현이 공공의 쟁점에 관한 경우일 때만 적용된다. 이 사건의 신용조사서는 순전히 사적인 이해관계만이 있는 표현물로서, 동 내용이 허위인 경우 현실적 악의의 입증이 없더라도 추정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판결이유

포웰 대법원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밝히고, 여기에 랜퀴스트 및 오코너 대법원판사가 견해를 같이 한다.

거츠 사건(Gerts v. Robert Welch, Inc., 418U. S. 323, 1974)에서 우리는 일반사인이 공공관심사에 관련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받는 데 있어서는 수정헌법 제 1 조(역주. 언론의 자유)에 따른 제한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는 수정헌법 제 1 조에 따라 원고가 「현실적 악의」 즉 피고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거나 진실을 무분별하게 무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추정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presumed and punitive damages)를 배상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위 거츠 사건의 법리가 공공의 관심과는 관계없는 사항에 관한 허위의 명예훼손적 진술에 관하여도 적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I

상고인(피고)은 이 법원이 거츠 사건에서 「적어도 허위의 인식 또는 진실의 무분별한 무시가 입증되지 않는 한 추정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할 수 없다」고 광범위하게 판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 있어서 1 심판사의 배심원들에 대한 지시는 그보다 더 적은 입증만으로도 그러한 손해배상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1 심판사는 언론사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거츠판결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서는 의문을 표시하였으나, 「그 내용에 대한 불만과 정의개념에 비추어 볼 때 재심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재심을 허용했다.

버몬트 주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동 법원은 일정한 경우 언론사와 비 언론사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상당한 구독료를 지불하는 제한된 숫자의 구독자들에 게재정적 정보를 판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신용조사업체의 경우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다고 실시했다. 동 법원은 위와 같은 신용조사업체의 이러한 특성에 근거하여, 그러한 업체는 뉴욕 타임즈 사건(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U. S. 254, 1964) 및 그 후속판결에서 실시된 바와 같은 수정헌법 제 1 조 상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형태의 언론사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동 법원에 사인인 원고가 특별한 과실의 입증 없이 추정적 및 징벌적 손해를 배상 받을 권리와, 언론사가 아닌 표현자의 수정헌법 제 1 조상의 권리 사이의 균형은 「비 언론사」인 피고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사인인 원고에 유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동 법원은 「연방헌법상 거츠 사건에서 실시된 언론사에 대한보호는 비 언론사의 명예훼손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우리는 하급심들 간에 언제 거츠 판결상의 보호가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불일치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고를 허가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로 하는 바는 다르지만, 버몬트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한다.

II

*본 판결이유 제 2 절은 1 심판사의 배심원들에 대한 지시가 현실적 악의에 대한 설명으로 족한 것이냐의 여부(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현실적 악의의 입증이 필요한가 라는 법률적 문제를 따질 필요 없이 원고승소를 선언한 1 심 배심원들의 평결이 그대로 인용되어야 함)에 관한 판단으로서(이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은 1 심판사의 지시는 일반적인 악의에 관한 설명일 뿐, 현실적인 악의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배치되는 피상고인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과는 직접관련이 없으므로 번역을 생략함.

III

뉴욕타임즈 사건에서 이 법원은 수정헌법 제 1 조가 주 명예훼손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한다고 최초로 판시했다. 그 사건은 흑인 인권시위에 있어서의 경찰의 행동을 비난하는 광고를 발표한 것에 대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광고는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공공의 쟁점중의 하나에 관련된 것이었다. 법원은 「공공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점과 「공공의 쟁점에 관한 논쟁은 제한되어서는 아니되고 활발하여야 하며 또한 널리 열려 있어야 한다. (Unfettered, robust and wide-open)」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무원은 허위의 발표가 「<현실적 악의>로써, 즉 허위임을 알거나 그것이 허위인지 여부를 무분별하게 무시하고」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모두 공공의 쟁점에 관한 그 후의 사건들에 있어 이 법원은 위와 동일한 헌법상의 보호를 공공인물(public figure)에 대한 명예 훼손에 대하여도 확정 하였고(예컨대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 S. 130, 1967), 로젠블룸 사건(Rosenbloom v. Macromedia, Inc., 403 U. S. 29, 1971) 에서는 다수의견(브레난 대법원판사)으로

명예훼손적 발표가 공공적이거나 일반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인 한, 이러한 헌법원칙이 모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거츠 사건에서 우리는 뉴욕타임즈 판결상의 보호가 로젠블롬 판결이 제시한 바와 같이 확장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거츠 사건은 존 버치 회의 월간지인 「미국의 견해」(American Opinion)이라는 잡지에 게재된 명예훼손적 기사에 관한 것이었다. 문제된 그 기사는 한 경찰관에 대한 시카고에서의 소추가 지방 법 집행기관의 신용을 떨어뜨리려는 공산당의 운동의 일부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원고인 거츠는 공무원이거나 공공인물도 아니었고, 그 소추에 미미하게 관련된 변호사일 뿐이었다. 위 잡지는 거츠가 위 경찰관에 대한 「조작」의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그를 공산당활동에 연계시켰다. 이 법원이 주의 명예훼손 법에 대한 헌법상의 제한을 인정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거츠 사건은 의심할 여지없이 공공의 관심을 끄는 사안에 대한 표현에 관한 것이었다.

거츠 판결에서 우리는 공공의 쟁점에 관한 표현이라고 해도 그 자체 만으로서는 명예훼손 피고로 하여금 뉴욕타임즈 판결에서와 같은 헌법상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우리는 이러한 보호가 오직 책임을 면제 받는 언론이나 방송매체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그러한 보호는 수정헌법 제 1 조의 법익과 공공인물에 의하여 제기된 명예훼손에 있어서 나타나는 주의 제한된 이해관계 사이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 사인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에 있어서는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위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대체로 일반 사인은 자신을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에 스스로 노출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그러한 발표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 일반 사인의 명예훼손을 보상해주려고 함에 있어 강하고도 정당한(strong and legitimate)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더 강한 주의 이익과, 뉴욕타임즈 사건에서 문제된 위 수정헌법 제 1 조의 법익을 서로 비교형량 함에 있어, 우리는 「현실적 악의」의 입증 없이 추정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가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우리의견의 어느 부분도 문제된 발표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위와 동일한 조화가 적용된다고 한 바는 없다.

명예훼손적 발표가 공공의 관심이 있는 쟁점에 관한 것이 아닐 때에도 거츠 판결이 실시한 바와 같은 비교형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고려한 적은 없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츠판결에서 취해진 접근 방법을 택하여, 사인의 명예훼손을 보상해주려는 주의 이익과 이러한 형태의 표현을 보호하려는 수정헌법 제 1 조상의 법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의 이해관계는 거츠 사건에 있어서와 똑같은 것이다. 동 사건에서 우리는 그것이 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주가 그것을 포기하도록 가볍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스튜어트 대법원판사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그 자신의 좋은 평판을 보호 받을 권리를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근본개념, 잘 정비된 자유체제의 근처에 있는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개인의 인격의 보호는 생명 자체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제 9 조와 제 10 조에 따라 각 주에 맡겨져 있다.」

한편 수정헌법 제 1 조의 법익은 거츠 사건에서보다 덜 중요하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모든 표현이 수정헌법 제 1 조 상 똑같은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해왔다.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한 보호의 핵심」에 있는 것은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표현이다. 코닉 대 마이어스 사건(Connick v. Myers, 461 U. S. 138, 1983) 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공공의 쟁점에 관한 표현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다;

「수정헌법 제 1 조는 사람들이 바라는 정치적 사회적 변혁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제한 받지 않는 사상의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공공사건에 관한 표현은 자기표현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자치의 본질이다. 따라서 법원은 공공쟁점에 대한 표현이, 수정헌법 제 1 조 상의 가치의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에 위치해 있으며,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빈번히 재확인해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순전히 사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에 대하여는 수정헌법 제 1 조의 관심이 덜하다. 이 사건 원심법원을 포함해서 수많은 주 법원들은 공공의 관심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뉴욕타임즈 사건이나 거츠 사건에서와 같은 주의 명예훼손 법을 규제하는 헌법의 기능이 훨씬 더 제한된다고 인정해왔다. 예컨대, 「공공쟁점에 대한 자유롭고 건전한 토론에 아무런 위협이 없다; 자치와 관련된 이념들의 의미 있는 대화에 대한 방해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언론사의 자기검열의 반응을 초래할 책임의 위험도 없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연방대법원이 고심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 1 조의 쟁점이 전혀 없다(Harley Davidson Motor sports. Inc. v. Markley, 279 Or. 361).」

그러나 그러한 표현이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하여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그 보호의 정도가 덜한 것이다. 거츠 사건에서 우리는 추정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자 하는 주의 이익은, 수정헌법 제 1 조의 핵심적 관심의 있는 공공관심사에 대한 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상당(substantial)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 이익도 그러한 손해배상이 헌법상 훨씬 덜 중요한 사적인 표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때는 상당하게 된다. 손해배상적 내용과 발표상황의 특성상 심각한 침해가 사실상 발생하였을 이 명백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건에 있어서 실제 손해의 입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보통 법 이론의 논리적 근거는 그 경험과 역사적 판단에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수세기 동안 배심원들로 하여금 많은 명예훼손적 언동과 발표로 인하여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게끔 허용해왔다. 이러한 이론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이 효과적일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그러한 손해배상제도를 준비해 두려는 주의 이익을 촉진시켜준다. 공공의 관심사에 관계 없는 표현이 헌법상의 가치를 별로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 비추어, 우리는 주가 심지어는 현실적 악의의 입증이 없는 경우에도 적절히 추정적 및 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다.

V

남은 유일한 쟁점은 상고인의 신용조사서가 공공의 관심사를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일정한 표현이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것인가는 전체 기록에 나타난 표현의 내용, 형식, 그리고 문맥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이러한 요소들에 의하는 경우 상고인의 신용조사서는 공공의 쟁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오로지 발표자와 특정한 사업상의 청중의 개별적 이익을 위한 표현이다. 이러한 특정적 이익은, 이 사건과 같이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이고 명백히 피해자의 사업상의 평판을 실추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아무런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더구나 그 신용조사서는 그 내용을 전파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아래 오직 다섯 명의 구독자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보고서가 상업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점에 관련된 강한 이해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러한 형태의 신용조사서가 공공쟁점에 대한 논쟁이 제한 받지 않고 활발하며 그리고 널리 열려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의 표현은 광고의 경우와 같이 주의 규제가 있다고 하여 억제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 억제하기 힘든 이윤 욕망에 동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보고서는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표현의 경우보다 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다. 어쨌든 허위의 신용조사서는 채권자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신용조사업체로 하여금 정확하도록 하는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 소송이 부수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VI

우리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현실적 악의의 입증이 없더라도 추정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 1 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우리는 버몬트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한다.

*이 판결에는 버거 대법원장과 화이트 대법원판사가 동조의견(거츠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위 의견에는 찬성하나, 거츠판결자체가 번복되어야 한다는 친해)을 제출하였고, 브레난 대법원판사가 작성한 반대의견에는 마샬, 블랙먼, 스티븐스 대법원판사가 동조하였다. (결국 5: 4 로 결정).